

대통령령 제 호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신고자등을”을 “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고자등”이라 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20억원”을 “30억원”으로, “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”을 “예산”으로, “지급하게 할”을 “지급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84조(위법행위의 신고 등) ①		제384조(위법행위의 신고 등) ①		
법 제43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		-----		
거래행위 등 법의 위반행위 또		-----		
는 위반행위의 강요나 제의를		-----		
받은 사실(이하 이 조에서 “불		-----		
공정거래행위등”이라 한다)을		-----		
금융위원회(법 제172조부터 제1		-----		
74조까지, 제176조, 제178조, 제		-----		
178조의2, 제180조 및 제180조		-----		
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		-----		
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		-----		
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		-----		
이 조에서 같다)에 신고하거나		-----		
제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		-----		
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		-----		
1. · 2. (생 략)	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
3.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(이하		<삭 제>		
이 조에서 “신고자등”이라 한				
다)의 신원을 밝힐 것				
②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		② -----		
또는 제보 사항에 대하여 <u>신고</u>		----- <u>신고</u>		
<u>자등을</u> 상대로 인적 사항, 신고		<u>또는 제보하는 자(이하 이 조에</u>		
또는 제보의 경위 및 취지, 그		<u>서 “신고자등”이라 한다)를</u> ---		
밖에 신고 또는 제보한 내용을		-----		

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. ③ ~ ⑦ (생략) ⑧ 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<u>20억원</u>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등에게 <u>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.</u> ⑨ (생략)	----- -----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30억원</u>----- ----- ----- <u>예산</u>----- ----- ----- <u>지급할</u> -----. ⑨ (현행과 같음)
--	--